

2026년 「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」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

고령군에서는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창업자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공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「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6. 7. 9.

고령군수

I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2026년 「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」
- 나. 사업기간 : '26년 7월~12월(6개월간) / 11월 말까지 리모델링 완료
- 다. 신청기간 : 2026. 7. 9.(목) ~ 7. 19.(일) 【10일간】
- 라. 사업량 : 2명(점포)
- 마. 사업내용 :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
(부가가치세 등 세금 제외 / 순수사업비)
- 바. 사업대상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1)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※ (2026.1.1. 기준) 1980. 1. 2. ~ 2008. 1. 1. 출생자 해당
 - 2) 고령군 거주(주민등록) 또는 거주 예정인 자(30일 이내 전입 조건)
 - 3)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5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
※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·월·일 기준 5년 이내(2026.1.1. 기준 '21.1. 1. 이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)
 - 4) 관내 소상공인 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[참고1]

사. 대상자 선발 확정 공고 :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 후 8월 중 예정

※ 대상자 선발 확정 공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

II. 지원대상

가. 지원대상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1)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※ (2026.1.1. 기준) 1980. 1. 2. ~ 2008. 1. 1. 출생자 해당
- 2) 고령군 거주(주민등록) 또는 거주 예정인 자(30일 이내 전입 조건)
- 3)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5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
※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·월·일 기준 5년 이내 (2026.1.1. 기준 '21.1. 1.이후 창업가 또는 예비창업가)
- 4) 판내 소상공인 (반드시 대표자가 청년일 것)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[참고1]

나. 지원 제외대상 :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

- ① 정부,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완료한 자
※ 예) 경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, 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등 창업공간 지원 성격의 사업
- ② 과년도 고령군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완료자
- ③ 취업(고용보험 가입자 등)중인 자, 각종 세금(국세·지방세) 체납자
- ④ 프랜차이즈 직영점·가맹점 및 무점포 사업자
- 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 규제 중인 자
- ⑥ 고령군 또는 공공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
- ⑦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자
- ⑧ 시공사 대표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및 (배우자)직계존비속
- ⑨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, 고령군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Ⅲ. 지원내용

가. 지원기간 : '26년 7월 ~ 12월 【6개월간】 / 11월 말까지 공사 완료

나. 지원내용 :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5백만원 지원

(부가가치세 등 세금 제외 / 순수사업비)

※ 예) 옥외 간판교체(LED 간판, 판형 간판 등), 인테리어 개선(방수, 단열, 도색 등), 화장실 공사 등

1) 최소 1년 영업(명의이전 불가) 및 주민등록(관내) 유지 조건

※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장으로 운영 및 관내 주민등록 유지

2)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 청구 시, 보조금(지원금)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
※ 지원 불가 항목

- ⊗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
- ⊗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,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
- ⊗ 점포 임차 보증금,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
- ⊗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,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용
- ⊗ 공과금,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
- ⊗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 형성 비용
- ⊗ 대상자 선정 통보일 전에 완료한 리모델링 비용
- ⊗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리모델링 비용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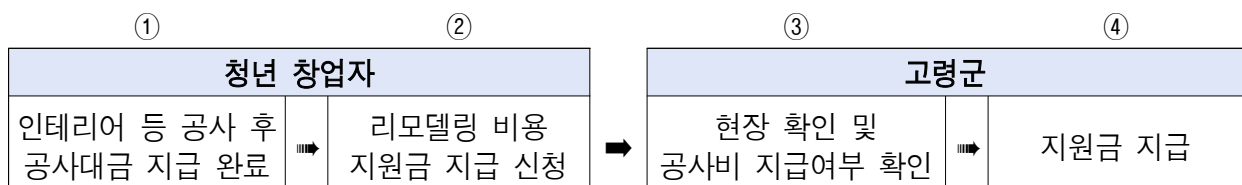
다. 지급방식 및 기타사항

1) 사업대상자가 리모델링 시행 및 리모델링 비용 선 지급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2) 지원금 지급신청 시, 반드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
※ 의무사항 이행(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장 영업 및 관내 주민등록 유지)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, 보험료 자부담

3) 군은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 등 해당 제출 서류를 모두 군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예정



- 4) 대상자 선정일(8월 중 예정) 이후부터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지원함
- 5)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

구 분	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	발 급 처
필 수	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	[서식6]
	② 이행보증증권 사본 1부 ※ 의무사항 이행 유지(최소 1년 이상 영업 유지 등)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, 보험료 자부담	신청인
	③ 리모델링 비용 정산 내역 1부 ※ 견적서, 공사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이체내역서, 공사 전·중·후 사진 (공사비 지급 여부 확인 목적)	신청인

라. 대상자 선발 취소 및 지원 중지 :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2) 사업기간 내 사업장 및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변경하는 경우
- 3) 대상자 선발 후 사업장을 휴·폐업하는 경우
- 4)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
- 5) 허위로 신청서 및 지급신청서를 작성 또는 제출한 경우
- 6)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IV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가. 모집인원 : 2명(개소)

나. 신청기간 : 2026. 7. 9.(목) ~ 7. 19.(일) 【10일간】

※ 대상자 선발 확정 공고일 :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 후 8월 중 예정

※ 대상자 선발 공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

다. 신청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※ 7. 19.(일)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

- (방 문)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
- (전자우편) djjeong01@korea.kr

라. 신청기준

- 1)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

- 2)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
- 3) 예비창업가의 경우 사업 예정 점포 소유주의 임대확약서(서식5) 제출 필수
 - ※ 영업을 위해 다른 법령상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,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후 지원해야 함
 - 예) 숙박업, 외식업 등 관련 인·허가 충족 후 지원 가능
- 4)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

마. 필수 제출서류

신청서류	비고	발급처
①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	필수	[서식 1], [서식 2]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	필수	[서식 3], [서식 4]
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	필수	정부24
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※ 목시적갱신 계약 연장의 경우 과년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※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	필수	신청인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필수	신청인
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-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 연·월·일 포함일부터 ~ 신청일까지	필수	정부24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
⑦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 ※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	해당자	신청인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(직인 날인)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.

V.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발

가. 대상자 선발

- 1차 서류심사 :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

- 2차 현장심사 : 자체 심사표에 따라 현장 방문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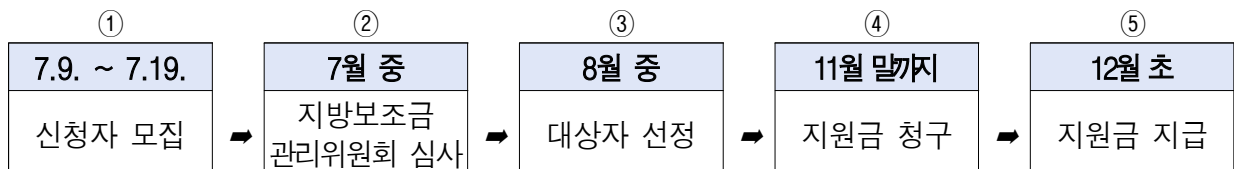
항 목	세부항목	배 점	내 용
사업 필요성 (현장, 정성, 정량)	건물 노후도 및 대상 항목 확인	30	- 상가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성 ※ 건축 준공연도 및 현장 확인 후 부여 - 항목별 사업비 책정 적정성 등
지역발전 (정성+정량)	지역발전 기여도	20	- 창업아이템의 지역연관성 (10점) - 고령군 거주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(10점) (① 거주기간 긴 자, ② 전입 예정자)
지속 가능성 (정성)	지속 가능성	15	- 사업 지속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- 창업자의 지속의지 등 사업수행 역량
업 력 (정량)	창업 기간	10	- 창업 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※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 연·월·일로부터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
점포 규모 (정량)	점포 규모	10	- 점포 규모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※ 점포가 클수록 높은 점수 부여
운영현황 (정량)	운영현황 구분	10	- 임대기간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 (5점) - 임차료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 (5점) -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 소유의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(1점)
재산세 현황 (정량)	재산세 납부 현황 등	5	- 재산세 납부액에 따른 점수 부여 ※ 재산세 납부액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
가 점	사회적 배려자 등	5	- 취업보호지원대상, 취업취약계층, 다자녀가구 등 해당 시 (5점)

※ 자체심사 결과 동점자는 고령군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, 거주기간은 고령군에 최근 전입한 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산정함

2) 선정방법 : 「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」에서 심의·결정

3) 선정결과 발표 : 심사 및 심의·결정 후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
통지 예정 (8월 중 예정)

나. 사업일정



Ⅵ. 유의사항

-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정부,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수혜자는 본 지원금 수령에 따라 관련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고 공공재정 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와 제재 부과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고령군 외 타 지역으로 옮긴 후 군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대상자 선발 이후 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(주소지 이탈, 사업장 휴업·폐업 등)
-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소 1년간 사업장을 영업 및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하는 경우 추후 관련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모집 공고를 통해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문의

-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(☎ 054-950-6589)

<참고1> 제외업종 목록

※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

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제외업종

표준산업 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다만,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112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
표준산업 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 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